

보험목적물의 수용장소

1. 사고의 개요

1988년 3월 20일 보험계약자 K와 보험자 L 사이에 전북 이리시 영등동 소재의 건물내에 수용되어 있는 양모를 보험목적으로 하여 보험금액은 2억원, 보험기간은 1988년 3월 20일부터 1989년 3월 20일까지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그후 1988년 4월 1일 다시 위 건물내의 반·완제품에 대하여 보험금액은 3억원, 보험기간은 1988년 4월 1일부터 1989년 4월 1일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1988년 5월 25일 04시 30분경 위 건물의 건조기부근 천정에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동 건물내에 있는 재고동산이 소실 또는 오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보험자 L이 본건 화재로 소실된 동산은 보험목적수용장소에 있는 동산이 아니라 하여 면책처리하자 분쟁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낭사사주장

보험계약자 K는 본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 창고 및 공장과 함께 연결된 단일건물로서 그 안



이순관

한국보험공사 분쟁조정국

에 수용되는 동산은 작업공정이나 성질상 수시로 동 건물내를 이동하고 있으며 또한 단일건물 중 특정된 일부면적에 적치되어 있는 동산만을 제한해 보험에가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보험자 L은 본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화재로 인한 공장부분의 동산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보험자 L은 본건 화재보험계약은 청약서 및 보험증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의 철골조 슬레이트즈 평가건 창고 1동 6백59평 내에 수용된 동산만을 담보하도록 되어있고, 화재사고는 창고건물이 아닌 공장건물 2천1백4평 작업장내에서 발생하여 동 작업장

내에 있는 동산만을 소실 및 훼손시킨 사고이기에 화재로 인한 동산손해는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되어 위 화재보험계약에서는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면책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판정내용

본건 분쟁사안을 심의한 손해보험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기각판정을 하였다.

「……D 손해사정주식회사의 화재손해사정보고서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의 건물은 전북 이리시 영등동 191-1와 182-4의 2개 필지위에 2개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보험의 목적이 소재하는 위 191-1의 필지에 있는 건물은 공장건물과 창고건물로 구분되어 있어 건물 내용도 다른 별도의 건물로 되어있으되 다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창고건물의 면적은 6백59평, 공장건물의 면적은 2천1백4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본건 화재사고는 공장건물(2천1백4평) 내에서 발생하여 동 건물내에 있는 재고동산이 소실되었고 창고건물내에 수용되어 있는 재고동산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모집경위서, 본건 청약서 및 화재보험증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본건 보험목적물은 창고건물 6백59평내에 수용된 동산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화재로 소실된 공장건물(2천1백4평)내의 동산은 보험목적 수용장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공장건물에 수용된 동산이 본건 화재보험에 가입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마치는 글

화재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수용장소의 범위를 제한하여 체결되고 있다. 따라서 청약서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용장소의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 있는 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재보험계약에서는 담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목적의 수용장소와 관련하여 최근 화재사고발생시 소실된 동산이 화재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보험목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목적의 수용장소 범위에 관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보험목적의 수용장소를 일정건물내로 청약서에 기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화재는 건물내가 아닌 건물주위에서 발생하여 건물처마밑 또는 건물과 밀접하게 적치되어 있는 동산이나 건물주위의 야적동산이

소실되었을 때 이를 보험목적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둘째, 한 공장지역내에 여러 개동의 건물이 있는데 여러 개동의 건물중 보험목적이 수용되어 있는 건물을 청약서 등에 명백히 기재하지 않고 막연히 일부 건물에 들어있는 동산일체를 보험목적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연 보험목적물이 소재하는 건물은 여러 개의 건물중 어느 건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세째, 건물옆에 천막건물 등 가건물이 붙어있거나 또는 건물 옥상에 가건물이 있는데 청약서에는 단순히 보험목적의 수용장소가 건물내로만 표기되어 있을 때 동 가건물내에 수용되어 있는 동산이 소실되었을 경우 역시 이를 보험목적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분쟁의 발생원인은 보험계약자 측에서 보험목적의 수용장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보험계약 체결시 수용장소를 불분명하게 처리했거나, 또는 현실적 보험거래에 있어 보험계약자로 부터 청약서작성을 위임받은 보험모집인이 구체적인 보험계약자의 의사는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초래되는 경우도 있다.

보험계약내용은 우선 일차적으로 청약서나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을 기초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실적 보험모집실태를 감안할 때 청약서나 보험증권의 내용만 가지고 처리할 때에는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보험목적의 수용장소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계

약당시의 당사자 의사내지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가급적 당사자와의 진실한 부보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런데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사자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결국은 청약서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계약당시의 계약자 의사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보험모집인이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몰라도 보험자에 유리하게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 당시 수용장소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이다.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창고건물 및 공장건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작업과정상 동산이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점, 또한 동산에 대한 보험금액이 3억원이나 새로 증액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창고와 공장건물을 포괄하여 계약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장건물면적은 2천1백4평으로서 청약서에 기재된 수용장소인 창고면적 6백59평에 비하여 훨씬 넓은 평수일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는 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일반 개인보험의 계약자보다는 어느 정도 보험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약서 기재 내용을 몰랐다거나 계약자의 진의와는 달리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약서 및 보험증권내용대로 판정을 내린 것으로 사료된다. ⑩